

2012. 05. 18.

## 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 번호	안건명	비고
1392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393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94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012.05.14	2012.05.14	2012.05.17	2012.05.17	정태갑 의원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5.14	2012.05.14	2012.05.17	2012.05.17	천명숙 의원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05.10	2012.05.14	2012.05.17	2012.05.17	주민지원과장

## 2. 제안설명요지

###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1) 제안이유

-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문화교류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공생의 사회를 만들어 다문화가족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명시(안 제2조 ~ 안 제5조)
- 다문화가족의 지원사업, 대상범위를 명시(안 제6조, 제7조)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명시(안 제10조)
- 사무의 위탁 등을 명시(안 제13조)

##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어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 기회보장을 위해 시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안 제5조)
-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2조 제2항)
-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 삭제(안 제16조)
- 용어의 명칭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3장의 제목, 제10조 ~ 제15조, 제17조~ 제21조)

##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저소득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으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의 보행활동을 돋고,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 및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함

### **2) 주요내용**

-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활동을 돋기 위하여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 지원(신설) (제2조 2호)
- 보행 보조차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신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 귀화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간 갈등,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의 수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대상범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자치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경우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는 결혼이민자는 522명, 혼인귀화자는 278명이며, 자녀수도 730명에 이를 정도로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문제와 다양한 행정수요를 낳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사항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시립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 안 제12조 제2항은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하여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현행 조례 제16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시립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년을 준용하여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5급 공무원, 보육교사는 6급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규정에서는 모집·채용 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위법성이 있으므로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 2009.5.28. 선고 2007추134판결)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시설 및 보육 시설 종사자의 명칭이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근로자의 균등한 취업 기회보장을 위해 시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차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제명을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를 “충주시 저소득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행보조차 지원 대상을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체활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연장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음.
- 현재 우리시의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497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347명,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782명 등 총 3,626명임.  
조례가 시행되면 대상자가 250명으로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검토결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보행편의와 구입비용 부담 경감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보행보조차의 사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 답변 요지

###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질의 : 1년에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어느 정도인가?

○답변 : 4억 9,700만원 정도임.

▶질의 : 조례가 제정 전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조례 제정 후의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답변 : 보다 활성화 되고 관심을 고조시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연령이 폐지되면 70, 80세 되시는 분도 시립어린이집 원장이 가능한가?

○답변 : 원장은 할 수 있지만 임금은 65세까지만 지급됨.

▶질의 : 연령을 폐지하면 계속해서 원장을 하게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답변 : 위탁을 할 경우 심사기준이 있어 연령 등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음.

###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 대상 노인분들에게 다 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이 많이 들것 같은데?

○답변 :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 할 것임.

## 5. 심사결과

- |                                     |        |
|-------------------------------------|--------|
| (1)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 원안가결 |
| (2)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
| (3)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원안가결 |